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78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사유

삼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현보건지소의 건물은 15년경과하여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현부지는 건폐율이 부족하여 재건축 불가하며,
- 진료실 천정, 내벽면, 공중보건의 숙소 등 강우시 누수가 심하여 이전신축하여 의료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에 주민 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부지매입 하고자 함.
- 신축부지 매입 완료 후 삼산파출소 부지와 매입부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거 교환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 함.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 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으로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

- 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탈 박물관 신축 및 부지매입

- 문화기반사업과 전통문화 전승 발굴 공간확보 및 기능전수를 위한 탈박물관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삼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매입

○ 취득재산 현황

- . 소재지 :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263-11번지의 3필지
- . 지 적 : 812㎡(245평)
- . 재산가액 : 25,000천원

거류면 체육공원 부지 매입

○ 취득재산 현황

- . 소재지 :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886번지의 28필지
- . 지 적 : 34,103㎡(10,316평)
- . 재산가액 : 526,076천원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

○ 취득재산 현황

- . 소재지 :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92-3번지의 1필지
- . 지 적 : 910㎡(275평)
- . 재산가액 : 96,250천원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토지

- . 위치 :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654번지의 2필지
- . 면적 및 가격 : 847㎡, 97,405천원

○ 건물

- . 위치 :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666-18번지의 2필지
- . 건물구조 : 지하1층 754.5㎡, 지상1층 1,015.50㎡
- . 건물 연면적 : 1,770㎡(536평)

- 재산가액 : 20억(사업예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보건소 소관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등 3건으로서
- 먼저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은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노후화되고 협소한 삼산면 보건지소의 진료공간 확보와 보건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축부지매입 완료후 삼산파출소 부지와 일부 매입한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할 목적으로 교환계획(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국유재산법 제43조)을 수립시행하여 이전신축코자 함이며,
-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대하여 거류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은 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 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매입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거류면민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 방안 및 방법,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승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진입로 확보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탈박물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진입로가 없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을 보면 진입시 필요한 토지가 2~3개 필지가 있는데 도로에 접한 필지는 공사

착공 이전에 기공내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시공을 해야할 것이고 탈박물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140~200개의 탈소장품도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군 내지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확약을 받고 탈박물관을 발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접한 필지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평가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사용승락서를 징구할 것이며, 박물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탈소장품도 탈박물관에 기증한다는 서면 증서를 받고 공사 착공 하겠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